

2026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

1. 근거

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(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) 3항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

2. 이수 기준

구분	주요원칙 및 내용		비고
이수 대상	일반대학 교직과정 (비사범계)	2회 이상	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※ 휴학생 및 교환학생 이수 불가
	사범대학	4회 이상	
	편입학/재입학/복학자	입학 연도(학번) 기준 적용	학적 변동자

3. 운영 계획

가. 대면 특강은 1회 운영, <신입생 맞춤형> 및 <별도 특강>은 온라인(e-campus) 진행

나. 4회 이수 조건 중 **1회 이상은 대면 특강** 방식으로 **이수**해야 함

구분	정규교과목 특강	교육실습 맞춤형	별도특강
	신입생 맞춤형		
교과목 및 개설 학기	미래교사와의사소통 (1학기)	교육봉사활동1, 교육봉사활동2, 학교현장실습 (1학기, 2학기)	- (1학기, 2학기)
대상 학년	1학년	-교육봉사활동1,2 : 1~4학년 -학교현장실습 : 3~4학년	1~4학년 중 해당연도 미이수자
이수 방식	온라인(e-campus) 특강	대면 특강	온라인(e-campus) 특강
비고	※ 강의계획서의 성인지교육 일정 확인	※ 교육실습 특화 내용 반영	※ 공통 내용
인정 기준	교과목 패스(P)와 영상 4차시 모두 이수한 경우	4차시 모두 100% 출결 확인 시	영상 4차시 모두 이수한 경우

4. 교육 내용

가. 프로그램 유형별 특화 내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함

나. 외부 전문가 특강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이수내용 (온라인)	1차시	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	2차시	가정·학교·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	3차시	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
	4차시	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/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※ 4개 차시 모두를 이수해야 1회 교육 인정		
이수내용 (대면)	1차시	성인지적 관점에서 수업·생활지도 고려 사항
	2차시	양성 평등한 교실 운영을 위한 학생 지도 시 교과 지도에서 고려할 사항
	3차시	성인지적 관점 수업 예시
	4차시	학교에서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 시
※ 4개 차시 모두를 이수해야 1회 교육 인정		

5. 이수 대상

구분		교과목명	대상
정규교과목 특강	신입생 맞춤형	미래교사와의사소통	신·편입생 등 첫 학기 등록 학생
교육실습 맞춤형		교육봉사활동1	직전 학기 이수자 제외
		교육봉사활동2	
		학교현장실습	
별도특강		-	해당 학기 재학생 중 직전 학기 이수자는 제외 (단, 졸업예정자/조기졸업 희망자에 한하여 이수 가능)

※ 4개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(편입생/복학생/재입학생/조기 졸업예정자 등)는 '성인지 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'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.

6. 주의사항

가. 온라인 특강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며, 문자/샘물 PUSH로 안내 예정임

나. 대면 특강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 참석 여부를 신청해야 함

다. 대상자 문자/샘물 PUSH 안내함

라. 온라인 특강은 4차시 모두 영상 진행률이 100%로 되어 있어야 인정됨

※ <미래교사와의사소통>교과목 수강생은 수업이 'P' 되어야 교육 이수 횟수 인정

마. 대면 특강은 4차시 모두 출석 확인 예정이며, 특강 시작 후 10분 이상 지각하거나 특강 도중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처리함

바. 반드시 본인 이수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**이수 기준 횟수에 미달하는 경우 '교직자격증 취득 불가'** 처리가 될 수 있음

7. 특기사항: 2025학년도 1학기부터는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'성인지 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'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(※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 주요 개정 내용에 근거함)